의안 번호	58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

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9.28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일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(의안번호 제58호)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,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함.

나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

나.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」제18조(위탁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※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
- 신규위탁: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
- **재 위 탁: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**
- 변경위탁: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,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(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)

○ 필요성

- (보육서비스의 연속성 확보) 기존 수탁자와의 재위탁을 통해 영유아에게 익숙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
- (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) 지난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학부모·지역사회와의 공고한 신뢰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보육 행정의 공백과 혼선을 사전에 예방
- (행정절차의 효율성 도모) 수탁자 변경 시 발생하는 자산 인수인계 등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소모를 방지하여 행정 효율성 도모

다. 사무의 내용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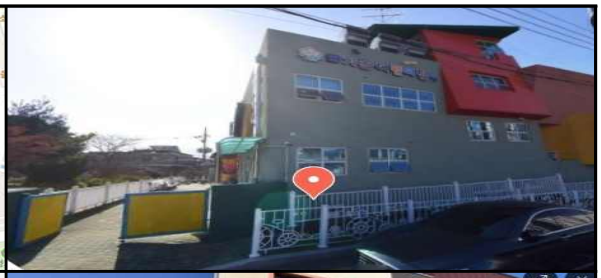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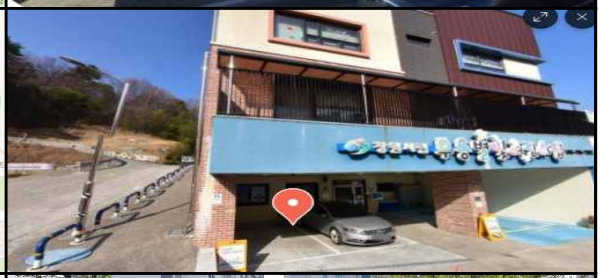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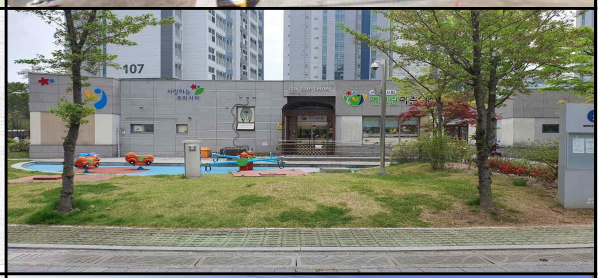
-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관리, 보육교직원 관리, 영유아 보호 및 교육 등

라. 민간위탁 시설 현황

○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수탁자	정원/현원(명)	면적(m^2)	위탁기간	비고
창원시립 가음어린이집	성산구 가양로 56번길 18	허송연	140/125	1,177	2022.1.1.~2026.12.31.(5년)	
창원시립 무동별빛 어린이집	의창구 무동안길 31	전연숙	80/44	615	2022.1.11.~2027.1.10.(5년)	
창원시립 예그린어린이집	의창구 무동서로 76	김명자	52/36	261	2022.3.1.~2027.2.28.(5년)	
창원시립 수피아어린이집	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1길 9-2	백금희	59/47	256	2022.3.1.~2027.2.28.(5년)	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가음		
무동 별빛		
예그린		
수피아		

마. 선정방식 :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

(심사점수 70점 이상 시 기존 수탁자 재위탁)

바. 재위탁 현황

시설명	수탁자	사업비	위탁기간	비고
창원시립 가음어린이집	허송연	664백만원	2027.1.1.~2031.12.31.(5년)	
창원시립 무동별빛 어린이집	전연숙	648백만원	2027.1.11.~2032.1.10.(5년)	
창원시립 예그린어린이집	김명자	403백만원	2027.3.1.~2032.2.29.(5년)	
창원시립 수피아어린이집	백금희	373백만원	2027.3.1.~2032.2.29.(5년)	

사.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기준	검토결과
①다른 사무방식으로 운영 가능성	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직영 운영은 인사·노무관리 등 행정부담이 크고 운영의 유연성이 낮으며, 공공기관 위탁은 수행 가능한 기관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,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 효율성,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임
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③경제적 효율성	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보육교직원 채용,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업무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
⑤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	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실적 및 자료관리가 가능하며, 통계자료 활용으로 사업개선 도모
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법령·지침 및 위·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⑦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	민간위탁 시 영유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용이

⇒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관계법령,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,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보육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아. 향후 추진계획

- 재위탁 안내 및 현지심사 : ‘26. 10. ~ ‘27. 1.
-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: ‘26. 10. ~ ‘27. 1.
- 위·수탁 계약 체결 : ‘26. 12. ~ ‘27. 2.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. 영유아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, 부모 상담, 보육프로그램 운영, 급식·위생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의 운영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아울러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[1]과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8조제1항[2]은 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**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공개경쟁의 방법**에 따른다.

2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**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다만,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.

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.

○ 현재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91개소이며, 이 중 직영 7개소, 민간위탁 84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본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7항[3]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0조제1항[4]에서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동의안의 대상인 4개 어린이집은 모두 2022년부터 기존 수탁자가 운영해 온 시설로, 이번 재위탁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한 차례의 재위탁에 해당하며, 재위탁 기간 또한 관련 조례에서 정한 5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3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⑦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**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**

4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0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) ① **위탁기간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부령"이라 한다) 별표 8의2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**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 또한 기존 수탁자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이에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에 대한 단순한 위탁기간의 연장이 아니라,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, 4개 어린이집별 운영성과와 보육서비스의 질,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○ 특히,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, 아동학대 방지, 급식·위생관리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중요하므로 집행기관은 재위탁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,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